오늘은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고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며

그에따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추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대출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채무를 진다" 라고 표현하는 데 이때 은행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된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압박 및 독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입니다.

채무를 졌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채권추심을 대행시키다 보니 채권추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이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아지다보니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도 생기게 되는데요.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법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만이 채권자로부터 의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다양한 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채권추심은 주로 사채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 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일이 발생하며 이것이 바로 불법 채권추심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지만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통해 국가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불법 채권 추심 유형

출처: 금융감독원

협박·공포심·불안감유발

하루 두 번 이상 반복 전화, 방문

이간 (저녁 9시~이침 8시) 독촉

제 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